

울산지방법원 2024. 3. 19 선고 2023가단6856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소송대리인 C

피 고 D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E

변 론 종 결 2024. 1. 23.

판 결 선 고 2024. 3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별지 목록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3층 F호 선내 (가)부분 33㎡를 인도하고,

나. 2023. 6. 17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3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할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오규희

별지